

교육부 공고 제2020 - 87호

2020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공모

교육부에서는 정책연구과제(“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등 총 15개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재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공모 대상 과제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총 15개 과제

< 공모 대상 과제 목록 >

연 번	연구과제명
1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
3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학술 데이터 관리방안 연구
4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5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6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다양한 학교체제 설립·운영 지원방안 연구
7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8	교육행정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9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연구
10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11	중·고등 역사부도 사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12	사서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13	미래사회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실습 강화 방안 연구
14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15	초·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개선 방안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외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 수행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동일인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책임 연구자로 1개과제, 공동연구자로 3개과제(책임연구자 과제 포함)까지 참여 가능

나. 응모 방법

- 제출 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별첨 2] 양식 참조)
 - * 정책연구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표지 PDF파일 형태)
 - * 정책연구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별첨 1]연구과제별 연구비 한도 내에서 [별첨 3]의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에 따라 작성
- 제출기한 : 2020. 3. 24.(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제안서(한글 파일) 및 표지(PDF 파일)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 부서별 연구협력관([별첨1]) 및 기획담당관 이경은 사무관(lkeun115@korea.kr)에게 동시 제출
 - ** 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 성명'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 정책연구 제안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하며,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연구협력관에게 전화로 문의 요망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제1차 심사(사전 심사,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연구내용,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경험,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 제2차 심사(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평가) :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와 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제안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선정 연구자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과제 담당부서에서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약 체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선정 심사 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별첨 3]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된 연구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6. 붙임

- [별첨 1] 과제 목록 및 내용(연구협력관 목록 포함)
- [별첨 2] 정책연구 제안서(서식)
- [별첨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